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아이티원(김영평), (홍인기), ② (주)포스코이앤씨(송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8066-7722, ② 031-370-9813

2. 명칭 : 건축물 골조공사 작업층 변화 추적 기반 영상감시장치 자동 보정·제어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객체 인식 및 현장 상황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건축물 골조공사 현장 상황의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작업층 상승(공사 진척도) 변화에 따른 영상감시장치의 Preset(화각, 위치)을 자동으로 보정·제어하여 골조공사 전체 기간동안 최초 설치 후 별도 위치변경 없이 지속적 사용을 지원하고, 사용자 단말기(웹, 모바일 등)에서 추락방지용 안전가시설 상태변화 인식 및 상황을 판단하는 AI 영상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플랫폼 기반 영상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송출하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이다.

<범위>

건축물 골조공사 시 작업층 상승에 따라 영상감시장치의 Preset을 자동으로 보정·제어하여 최초 CCTV 설치 후 위치 변경없이 지속 사용가능하게 하고, 단말기에서 추락방지용 안전가시설(개구부, 안전난간, 위험구역 등) 상태변화 인식 기반 상황을 판단하는 AI 영상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플랫폼을 통해 시각화 결과를 송출하여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무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